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1234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4. 9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17.

주 문

- 피고 D은 원고에게 32,665,008원 및 그 중 25,542,110원에 대하여 2024. 4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8 지분에 관하여 2023. 12. 1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,665,0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,888,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철환

별지